

등록번호	교육과정운영과-6780
등록일자	2016. 12. 27.
결재일자	2016. 12. 27.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교육과정운영 과장	교육과정정책 관
박진숙	곽윤철	강성철	2016. 12. 27. 남부호
협조자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2016. 12.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요약 보고

<'16.12.27., 교육과정운영과>

□ 추진 목적

-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예시로 제공하여, 각급 학교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 주요 변경 내용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협의체 협력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유공교원 표창

20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안)

2016. 12.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

목 차

I.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1
II. 추진경과	2
III. 추진방향	3
IV. 세부 운영기준	
1.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	4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5
3.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7
4.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8
5. 학생 봉사활동 지원 강화	9
V. 추진 기관별 추진 일정	10

[붙임]

1.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11
2.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 내용	14
3. 봉사활동 추진체계	15
4. 자주하는 질문(FAQ)	17
5. Dovol(두볼)-나눔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19
6. '16년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학교폭력예방 및 인성교육 연계 운영사례 ...	20

I.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영역 다양화·내실화 추진
 - 학생 봉사활동의 다양화·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지침 및 단위학교의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사례 제시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 영역 안정적 정착 추진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 강화 필요
- 「자원봉사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13~17, 행정자치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추진근거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9-41호 및 제2015-74호)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안전행정부, 2013~2017)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2017)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교육부, 2016~2020)

II. 추진경과

□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관리 역량 강화

- '1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시행('16.1.15.)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원칙 아래 수행
- '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을 위한 시·도 담당자 협의회('16.11.24.)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봉사활동 조기교육, 교육자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활동비와 활동기관 인정범위, 안전신고 및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참여 시 봉사 시간 인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협의
 - ※ '1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시·도 담당자 협의회('15.12.4.) : 봉사활동 사전교육, 문화공연 준비, 번역, 행사참여, 기부, 활동비, 헌혈, 선플달기 활동 등에 대한 인정 기준 협의

□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추진

-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운영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 수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 학생들이 개인 또는 동아리 단위로 스스로 봉사활동의 주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추진)
 - ※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15년 17팀, '16년 17팀
 -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성과보고회 개최(광주, '16.11.24.~25.)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다양한 학교 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15년 69센터, '16년 113센터
 -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울산 '16.12.7.~8.)

Ⅲ. 추진방향

목표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

실행

- ❖ 2009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초3~고3)
- ❖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운영(초1~초2)

추진 방향

- ❖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일관성 있는 학생 봉사활동 운영 방향 제시
 -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절차, 기본 인정 기준 및 내용별 인정(예시) 안내
- ❖ 봉사활동의 편성·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조
 - 단위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절차 강조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 학교 및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지역협의체 협력 체제 구축 및 봉사 프로그램 발굴·보급

IV. 세부 운영기준

1

학생 봉사활동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 교육 강화**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 교육 실시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 학기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2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

❖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 봉사활동 운영 기준 마련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자원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기관·단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 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 ※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봉사활동 시 사전 상담을 통한 인정 기관 확인
- 봉사활동 수행절차(예시)

단 계	활동 내용(예시)
(1) 사전 교육	•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2) 현장 교육	•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3) 실천	•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4) 반성 및 평가	•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2) 영역별 지침 - (다) 봉사활동

- ①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 ②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토,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시·도교육청별 자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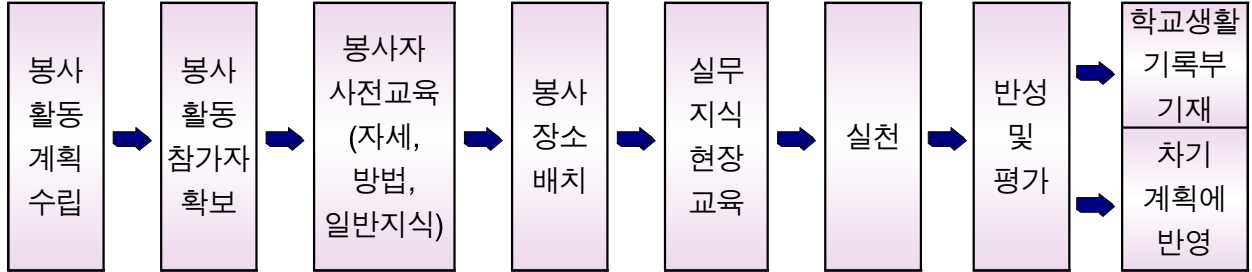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단위 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운영
 -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학교 자체 기준 및 운영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 관리 철저히 학생 봉사활동에 신뢰도 제고
 - 봉사활동 수업연구회의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과 연계 운영 권장(붙임6)
 -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www.cerzone.net)의 연구회 공개 자료방 자료활용
 - 학교 자체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계획 마련하여 운영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 강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교감(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부위원장), 위원(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준하여 구성
 - (역할) 학교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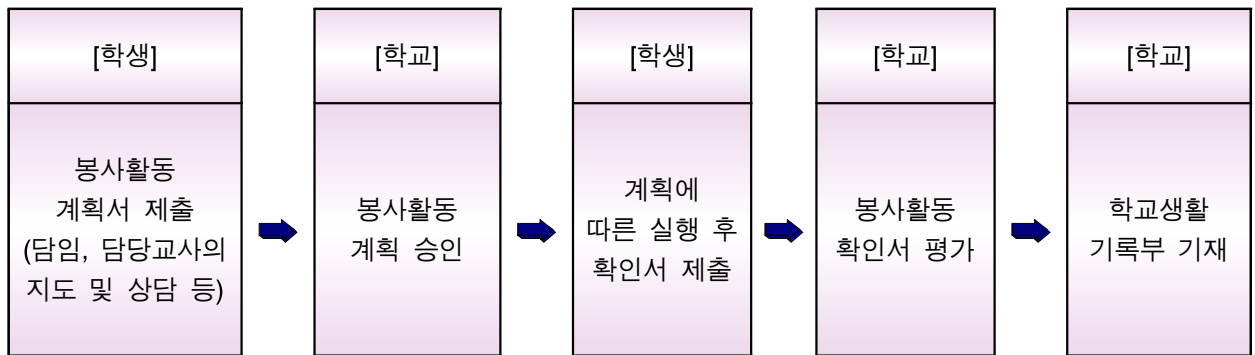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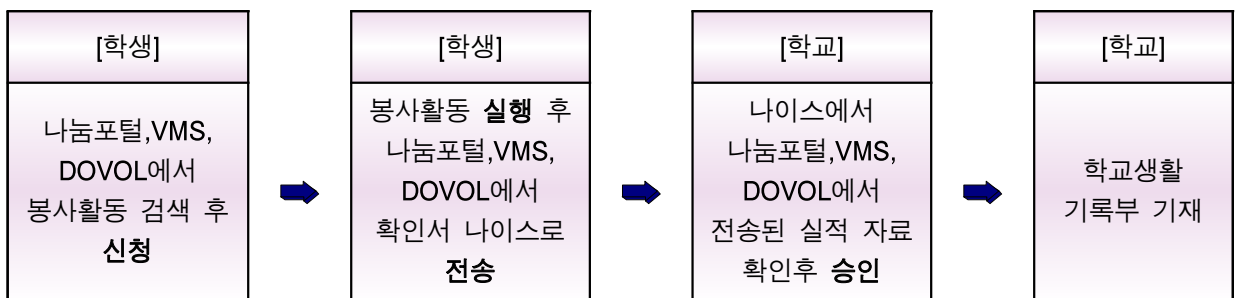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별 자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 학생 봉사활동 평가

-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체크리스트,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 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 나. 평가 - (1) 학생 평가 - (나)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②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5 학생 봉사활동 지원 강화

□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인정기준 마련

- 초·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해 교육부 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교육청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
 -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기준 마련하여 통일성 유지

□ 학생 봉사활동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 학생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17개 시·도교육청-자원봉사센터-청소년활동진흥원-사회복지협의회) 협력체제 구축·운영

- 봉사활동 인정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봉사활동 인정 기관 안내
- 자기주도적 봉사활동, 가족 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 프로그램 발굴·개발·운영

□ 학생 봉사활동 우수사례 공유

- 학교 및 학생 중심의 봉사활동 우수사례·안내자료 제작·배포 및 장학지도
 -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의의, 방법, 유의점, 절차 등) 및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전 안내하여 학생 봉사활동 인식 제고
 -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유공교원 표창

V. 추진 기관별 추진 일정

-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봉사활동 담당자 협의회('17.11.)
 - 수업연구회의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과 연계한 주요 운영사례 공유
 - 학생봉사동아리 우수 운영사례 공유
-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시간 인정기준 및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17. 1.~)
 - *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수업연구회 및 학생봉사동아리 지원 등 포함 권장
 - '17학년도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제출(~'17. 1. 31.)
 - 단위학교 봉사활동 담당자 연수 실시('17.2.)
 -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시도단위 워크숍 개최('17. 12.)
 - ※ 워크숍을 통한 우수 사례 공유 및 자료집 발간·배포 등
- (학교) '17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17.2.)
 - 교원대상 봉사활동 연수 실시('17.3.)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매 학기 초 및 방학 전)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연중 수시)

1. 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시간

【봉사활동 기관에서 활동영역 구분 입력 방법】

지역사회봉사활동(이웃돕기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베품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환경감시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 타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기준을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시간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 결정

2.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 시도교육청별 지역사회 여건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인정여부 및 기준 마련(다음 사례 참고)

-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 접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캠페인 활동)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인정
 - '선플달기' 작성 최대 12시간 봉사활동 인정
 -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 헌혈활동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추진 방안(시도교육청·단위학교 자율시행)
 - ▶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학생·학부모 대상 헌혈 교육 추진
 - ▶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첨부 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 *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 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VMS를 통해서만 실적인증 가능
- (안전신고) 겨울방학 및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수용된 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잠정) : 2.6.~4.30.
 - 타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TIMSS, ICILS 등)에 응시하는 학생에 대해 봉사시간 인정
 - 국제기구가 주관하고 국가 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요청하여 시행
 - 실제 평가(사전검사, 예비검사, 본검사 모두 포함) 수행 시간 인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 실천 강조, 자연환경 보존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가치 이해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편성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 - 가. 편성·운영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교내 봉사활동	•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 학습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등 •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자연환경 보호활동	•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 공공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관련 주요 내용

1) 봉사활동 교육 중점 내용

(초)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중·고) 학생의 취미·특기를 활용한 봉사 실천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및 활동 집중 편성

4. 편성·운영과 지원 - 가. 편성·운영 - (1) 공통 지침

③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③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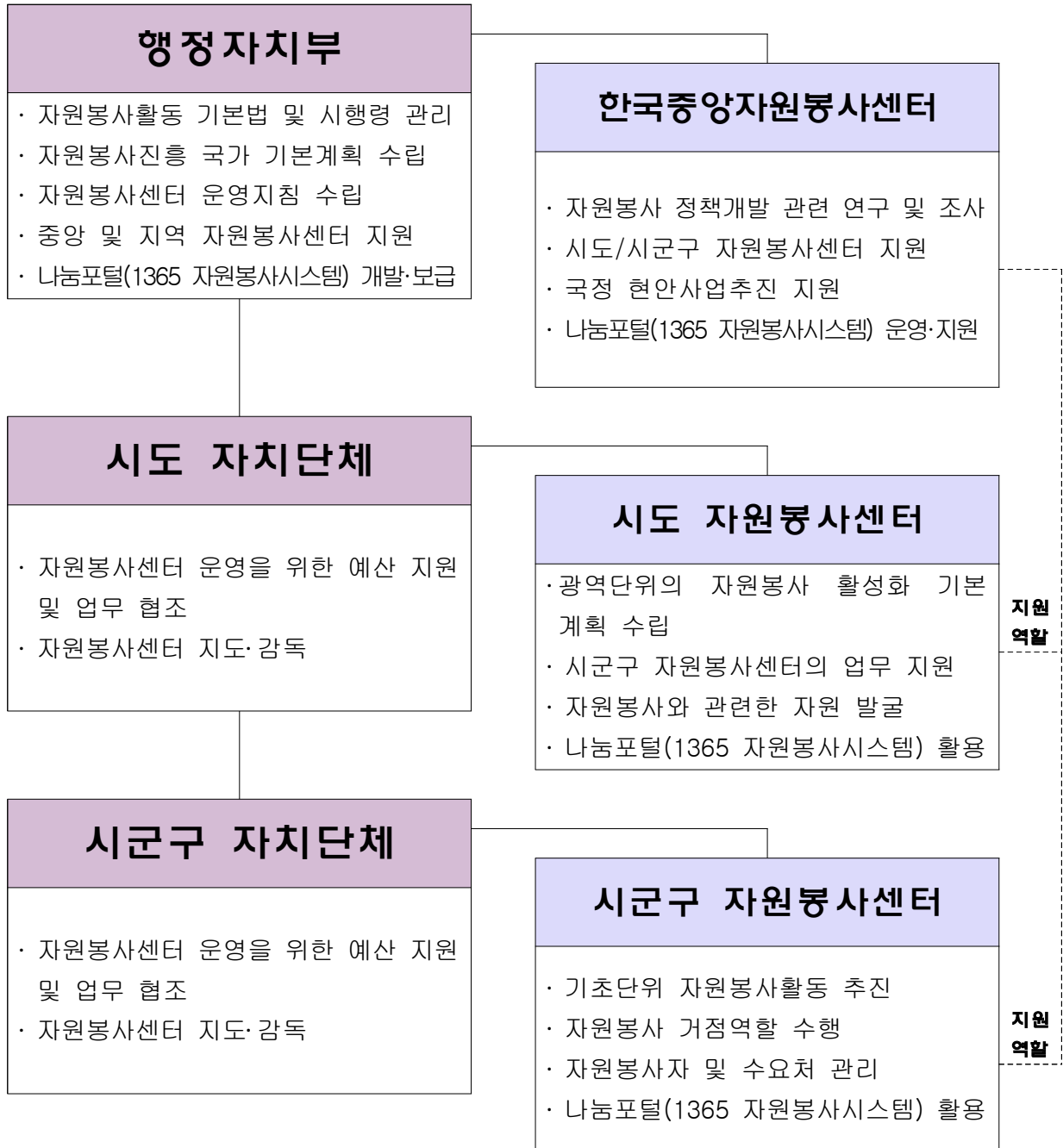
3) 봉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 친구돕기활동 - 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 지역사회활동 - 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 환경정화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 자연보호활동 -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붙임 3

봉사활동 추진체계

□ 중앙 → 시도 → 시·군·구 → 1365나눔포털 추진체계



□ VMS 추진체계



【문 1】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함. 영리기관의 공익 목적의 활동인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 기준에 의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방향에 적합하면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인정여부 결정 가능

【문 2】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는가?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문 3】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나?

- 학생봉사활동 추진 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을 경우에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 할 수 없음

【문 4】 교육기관에서 평일 행사에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가?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 가능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문 5】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시간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문 6】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정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시간 변경은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 및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적의 시행

【문 7】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문 8】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③ 문예작품(그림,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 등 봉사활동 인정 불가

【문 9】 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문10】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위배되는 활동비를 요구하는 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실적은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는 자체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활동비 허용 범위를 전면금지 또는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 허용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일부 허용한 경우 세부기준과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

붙임 5

DOVOL(두볼)-나눔포털 봉사활동 실적 연계 안내자료

□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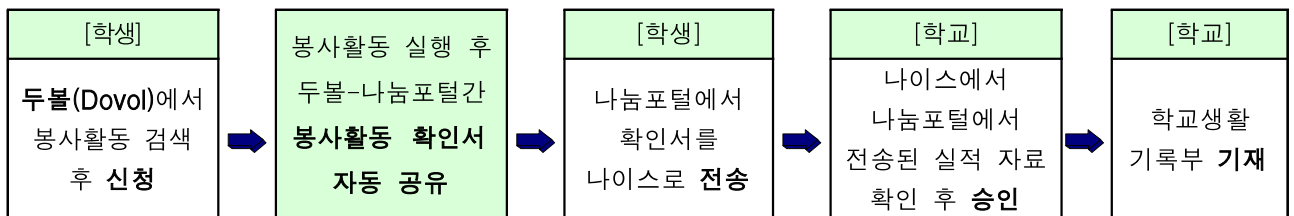


□ 연계 개요

- '14. 7.27부터 “두볼-나눔포털-나이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서비스 실시
- 두볼에서 '14. 3. 1.부터 참여한 봉사활동만 나이스로 전송 가능

□ 안내 및 요청사항

- 두볼을 이용하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사전 담임교사와 활동 내용 상담 필요



- 담임교사는 나이스에 직접 등록된 봉사활동 실적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실적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 요망
- 두볼 혹은 나눔포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학생이 나이스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요청
 - ※ 봉사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나이스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는 사례 발생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별 자체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한 경우 시·도교육청별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예방 행사 ‘달빛 축제’ 운영(울산 사랑드림 봉사단)
 - 등교하는 제자와 허그를 통해 소통과 나눔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
- 학교폭력 및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운동 참여(광주 정광중고, 광주 88교육봉사연구회)
 - 언어 순화를 통한 소통과 배려, 자기조절과 정의감 형성으로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친구들과 협동하여 창업동아리활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실천(충주상업고, 창업동아리)
 - 창업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또래활동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 학교 행복지수 상승으로 중도포기자 대폭 감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정책 발표대회(대전, 행복 나눔이)
 -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의식 고취

인성교육

- 「한뢰(大山) 창의·인성 UP 행복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성함양(충남 대산고)
 - 지역교육 교육공동체 협업으로 선순환 체제의 교육기부 체험·실천
-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봉사·인성 체험활동(광주 정광중고, 광주 88교육봉사연구회)
 - 교사·학생·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물사랑, 친구사랑, 나라사랑 실천
- 영·호남 지역감정 완화를 위한 융합형 봉사·인성 체험활동(광주 정광중고, 광주 88교육봉사연구회)
 - 영·호남의 교사·학생·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배려·존중 실천
- 교과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이론과 체험이 일치됨으로써 창의·인성함양(경기 나우누리 고양지역 향토이해 체험 봉사활동 교사연구회)
- 교사 수업연구회와 학생 동아리활동을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인성함양(강원 ‘더나’ 수업연구회)
- 소망공동체 장애우와 함께하는 인성수업(충남 마시멜로교사봉사단)
- 1365 지역사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함양(경북 2016 Happy together 봉사연구회)

※ 창의인성교육넷(크레존)(www.cerzone.net)의 연구회 공개 자료방 탑재 자료